



음 성 군



수신 엠아티건설(주) 귀하 (우361-8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71번길 30 (수곡동))

(경유)

제목 건축허가 처리 알림[(주)엠아티건설]

1. 귀하께서 2014.05.27.(음성군 민원 제66411호) 제출한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55-7번지 외 1필지 내 건축허가[공동주택(도시형),업무시설(오피스텔),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청서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하였기 알려 드리니, 아래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27,000원) 및 국민주택채권(₩1,620,000원)을 납부·매입한 후 영수증 및 채권 사본을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시고 건축허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정보통신설비 수요가 있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이며, 공사완료 후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사업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특정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때 공사착공 전 특정공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적합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하고 일련의 공사 등으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사업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그 발견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가능한 고효율 인증제품을 사용하시고 옥외 조경공간, 지하주차장 등에는 LED조명의 사용을 권고합니다.

8. 하수처리구역(분류식)으로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으로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건축물준공 전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9. 하수도법 제27조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 배수설비 공사는 음성군의 배수설비 대행업소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추후 건축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일 경우 일괄처리 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9.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의거 급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지하수와 병행급수는 불가함)

10. 수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절수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저촉사항 없으나 2층 주차장은 시속20km 주행속도로 정면 충돌시 견딜 수 있는 구조물로 구조계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촉사항 없으나 건축물 터파기를 제외한 절성토 발생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균유지인 353-19번지(29㎡)에 대하여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6개월 전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며 인입위치 변경 시 공사비분담 등을 사전에 협의(☎261-4646)하시기 바람에 도로굴착 인·허가 등에 따라 공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6.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 변경 시 학생수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교육청과 재협의 하여야 합니다.

17. 전파관리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나 향후 TV방송채널 전파수신 장애요인 발생 시 제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8.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의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대상입니다.

19.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조소 등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위험물 설치(변경) 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량 통행로 및 부지내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0.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이 채택되어 주거-66.13점, 비주거-67.57점의 성능지표 검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1. 건축허가서 1부.
2. 건축안내문 1부.
3. 도시가스위치도 1부.
4. 소방동의 여부 통보서 1부.
5. 소방안내문 1부. 끝.

【우리군에서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요구받은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고, 인·허가 공문에 기재된 제의무금 외에는 어떠한 경비도 소요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혹시라도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업무대행사로부터 업무처리 로비자금 명목으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군 기획감사실 감사팀(☎ 043-871-3041~3043)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성 군 수



★주무관 **하주형** 주택팀장 **안기홍** 도시계획팀장 대결 2014. 8. 29. 도시건축과장 전결 **박대식**

협조자

시행 도시건축과-4320 (2014. 8. 29.) 접수

우 369-70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 <http://www.es21.go.kr>

전화번호 043-871-3558 팩스번호 043-871-1914 / hagood2404@korea.kr / 부분공개(6)

【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